공직선거법위반

[대법원, 2007.1.25, 2006도8588]

【판시사항】

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정한 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 ’ 의 의미

【판결요지】

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소정의 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 ’ 라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고, 그 장비를 ‘ 탈취 ’ 한다고 함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비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하며,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이를 탈취하면 위 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,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 당시 그 소지자가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에 있거나 탈취자에게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.

【참조조문】

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상 고 인】 피고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석종외 2인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원심은,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, 피고인이 권영만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로서 선거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단속사무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, 유형력을 행사하여 동인이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피고인의 지배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,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하였는바,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김지형(재판장) 대법관 고현철(주심)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